

RISE 부산공유대학 위원회 운영 지침

제정 2023. 11. 24.

개정 2024. 2. 20.

개정 2024. 6. 10.

개정 2025. 7. 17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RISE 부산공유대학본부 운영 지침」 제6조에 의하여 부산공유대학(이하 “공유대학”이라 한다) 운영을 위한 공유대학 및 부산공유대학본부(이하 “본부”라 한다)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산학총괄협의회) ① 공유대학 사업추진에 있어 행정적 지원과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·조정을 위하여 지산학총괄협의회를 둔다.

② 회장은 본부의 본부장으로 하며, 부회장은 부분부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, 부산광역시, 부산라이즈혁신원, 지역혁신기관 등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중도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후임자를 위촉하고,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⑤ 지산학총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공유대학 운영 관련 행정지원 및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
2. 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의사결정 조정
3. 당연직 위원 및 부산광역시·부산라이즈혁신원·지역혁신기관 간 협력 사항

제3조(교육위원회) ① 공유대학 및 융합대학원 교육과정의 편성·운영을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본부의 본부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부분부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이 임명하며 내·외부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은 본부장, 부분부장, 중심대학 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하고, 대학교육 전문가와 산업체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 단, 외부 위원은 산업체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, 전체 위원의 50% 이상으로 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중도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후임자를 위촉하고,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- ⑥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1. 공유대학 교육과정 신설 및 주요 변경사항
 2.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신설 계획
 3. 교육성과 분석 결과에 대한 환류 및 질 개선 방향
 4. 그 밖에 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·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-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⑧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.
- ⑨ 외부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⑩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공유대학의 사업 운영과 정책 및 전략수립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위원장은 본부의 본부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부분부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은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이 임명하며 내·외부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은 본부장, 부분부장, 중심대학 책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, 대학교육 전문가와 산업체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
-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중도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후임자를 위촉하고,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1. 본부 사업의 기획 및 주요 운영 계획
 2. 본부 규정 및 지침의 제·개정
 3. 학생선발·지원·관리 등 운영방향
 4. 복수전공, 부전공, 마이크로디그리 등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
 5. 수요자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환류 방안
 6. 그 밖에 본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-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⑧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.
- ⑨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5조(대학협력위원회) ① 참여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학협력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본부의 본부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부분부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참여대학의 공유대학 사업 과제책임자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중도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후임자를 위촉하고,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⑤ 대학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공유대학본부, 중심대학, 참여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
2. 대학 간 운영 현안 및 과제 해결 방안 논의
3. 대학별 책임자 및 운영위원 참여를 통한 실무 협의

제6조(기타 위원회) 본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사업추진실무위원회, 자문위원회 및 T/F 등을 둘 수 있다.

제7조(기타사항)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본부의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(2023.11.24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4.2.20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4.6.10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5.7.17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